

대통령령 제 호

##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9호 중 “폐유독물질[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”을 “폐유해화학물질[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”로, “폐기물,”을 “폐기물, 제3호의 유해물질함유 폐기물,”로 한다.

별표 2 제3호 중 “혈액·체액·분비물·배설물이”을 “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·분비물·객담, 혈액·체액·분비물·객담·배설물 등이”로 한다.

별표 2 비고 제1호 중 “폐기물로서”를 “폐기물이”로, “폐기물은”을 “경우”로, “폐기물로 본다”를 “종류의 의료폐기물로 본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